



대 전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203466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전○○, 조○○
피 고 ○○광역시○구청장
변 론 종 결 2025. 3. 20.
판 결 선 고 2025. 5. 15.

주 문

1. 피고가 2022.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취득세를 면제하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1. 16.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장기요양기관 등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20. 3. 16. 노인복지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목적으로 ○○ ○구 B동 소재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취득하고, 2020. 6. 17. ○○ ○구 C 토지 400㎡(이하 '사건 외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2020. 3.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 6. 17. 사건 외 부동산에 관하여 각 아래와 같이 취득세 등 지방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납부일	부동산 (이하 지번만 표기)	종류	면적(㎡)	취득세	농어촌지방세	지방교육세
2020. 3. 16.	D, E	건물	400.32	2,160,000원	216,000원	108,000원
	F, G, H, I, J, K, L	대	1334	50,760,000원	2,538,000원	5,076,000원
	D	대	653	24,880,000원	2,488,000원	1,244,000원
	M, N	대	99	3,800,000원	380,000원	190,000원
2020. 6. 17.	C	답	400	7,800,000원	520,000원	520,000원

라. 원고는 2022. 1. 1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및 사건 외 부동산에 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3. 12. 29. 법률 제19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호의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취득세 면제 대상이라며 납부한 취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22. 1. 18. 원고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인 2020. 3. 16.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1. 6. 1.이 되어서야 노인의료복지시설 건축을



위한 착공신고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노인복지시설을 위해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여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무료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나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용도에 직접 사용(건축 중인 경우 포함)하지 않는 경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게 됩니다.

직접사용에는 '건축 중인 경우'도 포함되지만 건물 설계 작업이나 건축허가 및 심의 등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준비과정에 불과한 것으로 이를 해당용도에 직접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2020. 3. 16.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2021. 5. 17. 착공신고, 2021. 6. 1. 착공신고필증교부) 취득세 경정을 하지 않으며, 다만, 2020. 6. 17. 취득한 C(사건 외 부동산임)에 대해서는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수하였으므로 취득세를 전액 경정합니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4. 7.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3. 3. 1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과 사건 외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노인복지시설 건축에 필요한 부동산을 모두 취득한 2020. 6. 27.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 원고는 그로부터 1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 건축



공사에 착수하였으므로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인 G, I 토지 321㎡는 도시계획시설(도로) 부지로 결정된 토지(이하 '이 사건 도로부지'라고 한다)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노인복지시설 설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이 사건 도로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되었다는 고시를 함에 따라 원고는 기존의 설계를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 건축허가를 받는 과정에서도 행정절차가 통상적인 경우보다 지연되어 건축공사 착수가 지연된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3)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 간 이 사건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면제해달라는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련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20. 3. 16.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주식회사 O(이하 'O'이라고 한다)과 노인의료복지시설 설계협의를 시작하였는데, O이 작성한 사전기획설계 개요도(갑 제13호증)에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도로부지를 제외한 8필지 총 1,498㎡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이하 '최초 설계안'이라고 한다).



2) 원고는 2020. 4. 1. O과 설계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1차 설계계약'이라고 한다), 그 내용은 대지면적 2,468㎡, 건축면적 844.33㎡, 연면적 합계 3,965.19㎡의 지상 4층 건축물을 신축하는 것이었다.

3) 피고는 2020. 7. 1.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도로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장기간 시행되지 아니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실효되었다는 내용의 고시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

4) 원고는 2020. 7. 5. O과 대지면적 2,481㎡, 건축면적 1,078.97㎡, 연면적 합계 1,935.37㎡의 지상 2층 건축물을 신축하는 내용으로 다시 설계계약을 체결하였다가(이하 '2차 설계계약'이라고 한다), 2020. 10. 27.에 또다시 O과 대지면적 2,486㎡, 건축면적 1,078.52㎡, 연면적 합계 1,953.37㎡의 지상 2층 건축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설계계약을 변경하였다(이하 '3차 설계계약'이라고 한다).

5)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은 O은 2020. 12. 18. 피고에게 건축행정시스템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 및 사건 외 부동산 11필지에 노인의료복지시설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개발행위허가와 농지전용허가를 일괄 처리사항으로 표기하였다.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2021. 5. 10. 건축허가를 하였다.

6) 원고는 2021. 5. 11. 주식회사 P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착공신고를 하였으며, 피고는 2021. 6. 1. 원고에게 착공신고필증을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7, 8, 9, 13, 15호증, 을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취득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하고(지방세법 제6조 제1항), 취득세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고(지방세법 제7조 제1항),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지방세법 제10조).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하는데(지방세법 제18조),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지방세법 제20조).

2) 위와 같은 취득세에 관한 법 문언과 내용에 비추어 보면, 취득세는 개별 과세물건의 취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취득세 감면을 적용할 당시 기준이 되는 취득일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2020. 3. 16.이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목적은 고려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을 그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의 인정여부

1) 관련 법리

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했음에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납세의무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



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납세의무자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구 ○○○도 도세 감면조례(2009. 12. 31. ○○○도 조례 제3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에 관한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두 18582 판결 취지 참조].

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과세대상이 비과세 혹은 면제 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4049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에 갑 제10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그림1 갑 제13호증 2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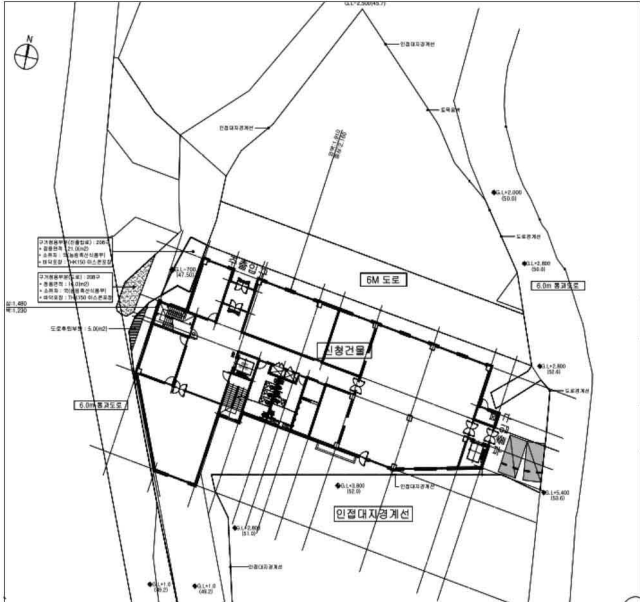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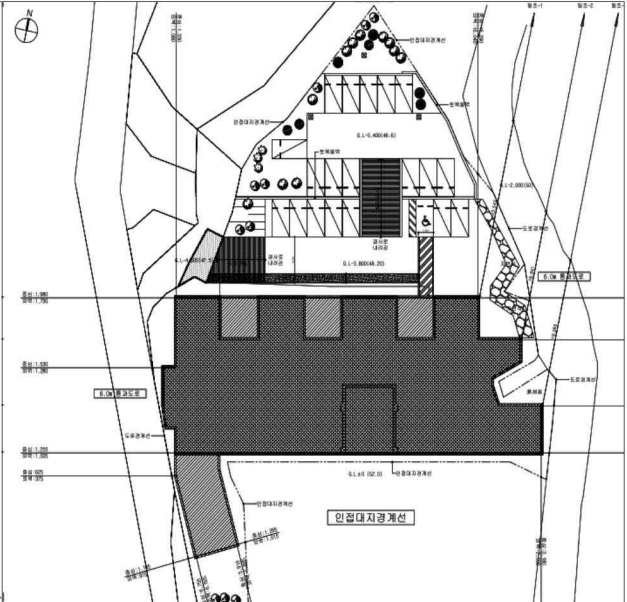


그림2 갑 제17호증 3면



가)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도로부지는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도로 사업이 장기간 미집행됨에 따라 2020. 7. 1. 이 사건 고시에 따라 도로 결정이 실효되었다. 1차 설계계약에 따른 최초 기획설계 도면(아래 그림1과 같고, 이하 '1차 기획설계안'이라고 한다)에 따르면 이 사건 고시 이전에는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 건물이 이 사건 도로부지를 침범하지 않도록 설계되었으나, 이 사건 고시 이후 변경된 기획설계 도면(아래 그림2와 같고, 이하 '2차 기획설계안'이라고 한다)에 따르면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 건물이 이 사건 도로부지 지상에 위치하도록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이 사건 고시로 인하여 원고가 소유한 이 사건 부동산 중 건축 가능한 가용부지의 형태가 달라짐에 따라 그에 맞추어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의 설계가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같은 원고의 선택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나) 건축설계는 통상적으로 기획설계1), 계획설계2), 기본설계3), 실시설계4) 순으로

1) 건축주와 계약을 결정하고 도시와 단지를 포함한 건축대지에 관한 각종 자료를 기초로 하여 디자인을 위한 기본적인 정보들을 가늠할 수 있도록 도면을 작성한다. 일반적으로 지적도, 도시계획도, 측량도 등을 사용하지만 실제적인 건축대지의 현재



설계업무가 진행된다. 원고는 1차 설계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고시일까지 약 3개월 간 기획설계를 거쳐 계획설계 단계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 설계 변경 전 공정계획 표(갑 제12호증)에 따르면이라도 계획설계부터 실시설계 완료일까지 약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는바, 2020. 7. 5. 설계변경 이후 2020. 12. 18. 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에 이르기까지 약 5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하여 일정이 지나치게 지연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1차 설계계약 체결 시점부터 사건 외 부동산의 취득과 이 사건 도로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될 것을 알 수 있었고, 2차, 3차 설계변경은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의 층수 및 구조 변경에 따른 것이므로 이 사건 고시로 인한 외부적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가 2014. 12. 30.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2016. 12. 2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였으며, 2020. 6. 12.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예정 도로목록 공고를 거쳐 2020. 7. 1. 이 사건 고시가 공고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도로부지가 포함된 Q 도로가 실효예정이라는 공고(을 제4호증)가 1차 설계계약 체결 이후인

상황과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현장조사를 하고 답사를 통한 주변 여건을 확인해야 한다. 건축에 관한 정보와 문헌 자료를 수집 정리한다.

- 2) 기획설계에서 결정된 개념들은 계획설계 단계에서 모두 도면화 된다. 동시에 계획설계 단계에서 건축주의 요구사항과 장래의 변화에 대한 대처방안과 시공도면의 작성에 필요한 중요사항을 결정한다. 그러므로 계획설계 단계에서 작성되는 도면의 목적은 건축가의 디자인 의도와 개념을 정립한다. 건축주와 협의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건축, 구조, 재료, 설비 등 총체적인 디자인 방침을 분명히 결정한다.
- 3) 기본설계는 계획설계를 더욱 발전시켜 심화하는 과정이다. 계획설계에 의하여 결정된 디자인은 건축주와 건축가 모두의 협의에 의하여 도출된 결과이므로 계획설계의 전반적인 정보는 기본설계의 바탕이 된다. 기본설계에 의한 도면들은 관련 행정기관과 이해집단의 판단을 수렴한 것이다. 주어진 계획도면으로부터 구조계획과 설비계획을 진행한다. 기본설계에 의한 도면들은 구조부재들의 위치와 치수를 정확히 결정하고 표현한다. 기본설계에서 평면도는 일반적으로 1:100 축척으로 작성된다.
- 4) 실시설계는 건축물을 정확히 건설하기 위하여 모든 건축요소를 결정하여 도면으로 작성하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실시설계도면은 건축가의 계획과 함께 다양한 건축 관련 분야의 계획을 종합해야 한다. 구조, 설비, 냉난방, 배관, 방화계획 등을 건축도면에서 반영하여 조정한다. 실시도면은 계획 전체를 제시하는 도면과 각 부분의 상세도로 구분된다. 계획을 제시하는 도면은 1:50 축척으로 작성되며 상세도는 1:50 축척에서 1:1 축척으로 작성된다. 도면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내용과 필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시방서, 구조계산서, 협력업체가 작성한 기타 관계 도서를 함께 작성한다.



2020. 6. 12.이 되어서야 이루어진 점, 담당 공무원 역시 이 사건 도로부지에 대한 도로 지정이 해제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확답을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을 최초로 설계할 당시부터 이 사건 고시가 이루어질 것을 예상하고 이 사건 도로부지에 대한 도로 지정이 해제될 것을 전제로 설계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된 사정은 사업 주체 내부사정이 아닌 천재지변이나 건축의 금지나 제한, 건축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 등 사업 주체 외부의 사정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

라) 피고가 근거로 제시하는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58227 판결은 원고가 노인복지시설 운영 목적으로 취득한 건물에 관하여 뒤늦게 용도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위 신청을 취하하고 결과적으로 해당 건물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지도 않은 사안이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3322 판결은 노인복지시설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관하여 토지 취득 당시부터 지역개발 잔여량 규제가 존재하였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아 문제가 된 사안으로 이 사건 부동산 취득 이후 이 사건 고시로 인하여 건축 가능부지가 변경된 이 사건의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

마) 나아가 ① 이 사건 도로부지에 대한 도로 결정이 실효된 2020. 7. 1.부터 착공신고필증을 받은 2021. 6. 1.은 1년 이내이므로, 만일 이 사건 도로부지에 대한 도로 결정의 실효라는 변수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공신고필증을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을 건축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



이는데, 원고가 2020. 3. 16.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그로부터 약 3개월 후인 2020. 6. 17. 사건 외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바, 위와 같이 소요된 시일이 부당하게 길다고는 볼 수 없는 점, ③ 그런데 원고가 착공신고필증을 받은 2021. 6. 1.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으로부터는 약 1년 2개월 보름 정도 후이고, 사건 외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으로부터는 1년 이내인 점, ④ 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 이후 허가가 이루어지기까지 여러 차례의 보완을 거쳐 2020. 12. 18.부터 2021. 5. 10.까지 5개월이 소요되었는데, 원고는 피고의 보완요구에 따라 충실히 보완을 이행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의 건축공사를 일부러 지연시켰다거나 태만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노인복지시설을 신축하여 현재까지 운영해오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기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

판사 손○○

판사 박○○



별지1

이 사건 부동산 목록

1. ○○ ○구 F 대 89m²
2. ○○ ○구 G 대 54m²
3. ○○ ○구 H 대 59m²
4. ○○ ○구 D 대 653m²
5. ○○ ○구 I 대 253m²
6. ○○ ○구 J 대 247m²
7. ○○ ○구 K 대 582m²
8. ○○ ○구 L 대 36m²
9. ○○ ○구 M 대 R대 582m²
10. ○○ ○구 N 대 31m² 끝.



별지2

관련 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3. 12. 29. 법률 제19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46조 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2. 제1호 외의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제1호 외의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 ①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노인복지법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6-09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
7. 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끝.